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14 선고 2024가단51116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
담당변호사 이정화

피 고 주식회사 B
변 론 종 결 2024. 7. 10.
판 결 선 고 2024. 8. 14.

주 문

-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3. 6.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8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 주식회사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를 상대로 위약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. 7. 20. “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3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18. 3. 16.부터 2020. 3. 2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11억 원에 대하여는 2020. 3. 21.부터 2022. 7. 2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(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131)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한편 D는 2018. 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19608호로 8,4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, 소외 회사는 2018. 9.경 D에 대한 8,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4901호로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8,000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8. 12. 25.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. 소외 회사는 2023. 6.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전부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8,000만 원의 채권(별지 목록 기재 채권, 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을 양도하고 2023. 7. 17.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 피고는 2023. 10.경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8,000만 원을 지급받았다.

다. 소외 회사는 2023. 6.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,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,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판결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되고,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

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23. 6.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,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 수령액 8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. 12. 31. 폐업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, 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한나라

별지